

세무회계저널
제9권 제3호 2008년 9월 pp.313~342
한국세무학회

회계법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검토*

정태범** · 박재환*** · 박희우****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도입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회계법인의 사원과 감사대상회사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로 회계감사시장이 Big 4 회계법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강제교체제도의 시행으로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초도감사비용의 증가, 감사보수의 추가 할인, 마케팅 비용의 지출 등 많은 부분의 희생이 수반되지만 이러한 비용 등이 감사보수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회계법인의 영업실적 감소로 귀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제도의 시행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신규 피감사대상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감사효율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의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현행의 감사업무담당사원의 3년 주기 교체와 같은 제도로 회계감사의 새로운 시각(fresh look)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감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건설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폐지 또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으며, 이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종합할 수 있다.

회계법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취지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 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며,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강제교체, 감사품질, 독립성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tbjeong@swu.ac.kr, 주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경학부, 조교수, jaypark@cau.ac.kr,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조교수, phwcpa@catholic.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08년 7월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I. 서 론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해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회계감사는 주주와 경영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보고 자료에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일종의 감독 장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바 그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 및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사회적 이슈를 제기했던 국내외적 회계분식 사건 등으로 인하여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회계감사 품질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되었다.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제도는 사전적인 것과 사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최근에는 사전적인 감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회계감사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장법인에 대한 3년 계속 감사인 유지를 보장하는가 하면, 감사담당이사는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금지하고, 감사 보조자는 3년을 주기로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도록 하였으며, 최근에는 동일 감사인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¹⁾

감사인 독립성 확보방안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한 6년 주기 감사인 교체(Mandatory Audit Firm Rotation)제도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서 아직 동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축적된 자료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 제도는 계속감사가 야기할 수 있는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의 유착관계 형성으로 인한 독립성 저해 또는 의견구매(opinion shopping)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미국의 회계개혁법인 Sarbanes - Oxley법에서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 Sarbanes - Oxley법의 Section 207에서 회계법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검토를 외부에 요청하여,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이하 ‘GAO’)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GAO는 회계법인, 최고재무관리자(Chief Financial Officer, CFO),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두 번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²⁾ 이 보고서에서 GAO는 감사인 교체제도로 감사품질이 보증될 지는 불확실하나, 감사관련 비용은 증가하고 감사인 교체가 Big 4 회계법인에 집중되어 그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단점을 언급하고 있다.³⁾ 또한 감사품질 및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에서의 강제적인 감사인 교체보다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교체 등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⁴⁾

1) 이태리, 브라질, 오스트리아는 상장법인(public companies)에 대하여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은행에 대하여만 강제교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스페인은 강제교체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강제교체시행에 따른 비용 등의 이유와 다른 보완적인 제도에 의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박재환 등(2008))

2) 보고서는 2003년 11월과 2004년 2월에 각각 GAO-04-216과 GAO-04-217로 미국 상원에 보고되었다.

3) 초도감사시 감사보수 할인 현상과 신규 감사로 인한 감사비용의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를 제한된 계속감사 기간내에 회수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사비용의 증가가 결국은 회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 상태로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감사 환경에 가져온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보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법인이 강제 교체 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감사인 교체와 관련한 선행 연구 및 감사인 교체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범위를 언급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회사 및 회계법인에서 동 제도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제Ⅳ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Ⅱ. 감사인 교체와 관련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범위

1. 선행연구

가. 계속감사와 감사품질 및 감사인 강제교체에 관한 연구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도입되면서 계속감사와 감사품질 및 강제교체와 관련한 국내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임영덕(2006)은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대해서 규제기관적 관점(Auditor entrenchment hypothesis)과 감사인의 관점(Auditor expertise hypothesis)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규제기관적 관점이란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하여 감사품질에 미치는 감사인의 독립성 상실 가능성을 강조하며, 감사인의 관점은 지식 및 경험의 축적으로 일정 기간 계속감사를 통해 양질의 감사품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연구결과는 계속감사기간과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인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계속 감사기간에 대한 비선형분석 결과 계속 감사기간이 6년 이하일 때와 2년에서 8년 사이일 때 감사품질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여 감사인의 관점에서도 의무적인 감사인 교체정책이 지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임영덕(2005)은 자발적 감사인 교체 환경에서 신용등급이 계속 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투자등급을 가지는 표본에서는 계속 감사기간과 이익조정이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표본의 경우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인 강제 교체정책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감사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박종성 등(2003)은 감사품질의 대용변수로 감리지적유무와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계속 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보이

- 4) 감사인 교체가 권고되는 상황으로서 주요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회계법인의 담당사원이 회사로 전직하는 경우 또는 감사수임기간이 10년 이상 정도로 장기의 계속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면서 3년간의 감사인 유지제도가 6년간의 감사계약기간 제한이 감사품질에 영향이 없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박재환 등(2008)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감사보수자료를 이용하여 감사인 강제교체시에 감사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강제교체기업의 감사보수가 일반교체기업의 감사보수에 비하여 추가할인이 있는지를 당해 연도 감사보수와 직전 연도의 감사보수를 비교한 감사보수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일반교체기업에 비하여 강제교체기업의 감사보수가 현저히 낮은 감사보수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강제교체기업의 감사보수증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강제교체제도의 도입이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의 연구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나,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로 인하여 감사보수의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하락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감사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감사보수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Brody and Moscovice(1998), Ryan et al.(2001), Dopuch et al.(2001)는 계속감사가 감사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Myers et al.(2003)과 Ghosh and Moon(2005)의 연구에서는 계속감사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나. 초도감사와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의 취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감사품질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인 교체로 새로운 감사인이 초도감사에 임할 경우 감사보수의 하락으로 인한 감사품질의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에서 초도감사와 감사보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신용인 등(200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감사보수의 할인을 감사보수 결정모형에서 추정한 감사보수보다 일정비율 이상 낮은 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초도감사기업의 감사품질이 계속감사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특히 초도감사보수할인기업의 감사품질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품질이 더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DeAngelo(1981)는 초도감사시 발생하는 초기개시원가와 감사인 교체에 따른 비용의 합인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초도감사보수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이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존재한다. Simunic(1980), Frnaxis(1984), Palmrose(1986)의 연구에서는 초도감사보수할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Simon and Francis(1988), Gregory and Collier(1996), Walker and Casterella(2000), Sankaraguruswamy and Whisenant(2003)의 연구에서는 감사보수할인 현상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 초도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할인이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사인교체 제도가 지지받기 위해서는 감사보수 할인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교체로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계속감사 또는 감사인 교체 중 어떤 것이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결론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하에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를 채택, 시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시행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실제로 회계산업의 구성원 사이에서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종합하고 동 제도의 유지 또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⁵⁾

2.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외국의 연구보고서

가. EABC(European-American Business Council) Policy Paper

EABC는 2007년 1월 31일 정책 의견서를 통해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제교체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에 공헌하는 바는 있지만 감사품질에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고비용을 초래하므로 동 제도를 반대하였다. 동 의견서에서는 강제교체제도가 감사품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감사의 효과성(audit effectiveness) 감소를 가져온다. 최근의 경영활동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 규칙과 회계감사 판단 분야에 있어서의 해석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영업 및 보고환경에 대한 축적된 이해를 통한 회계감사의 지식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통찰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주기적인 감사인 교체가 강제화 되면 독립성은 향상될 수 있으나 회사에 대한 이해도 감소로 감사품질의 저하를 초래한다.

둘째, 감사인 교체로 신규 감사인에 회사를 이해시키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이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한다. 또한 감사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감사대상회사를 발굴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현재의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감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공유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숨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감사품질의 저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EABC 정책 의견서에서는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사업무담당이사(leading partner)의 주기적인 교체 제도만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회사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역할 강화를 통하여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같은 반시장적인 해결책(anti-market solution)은 비용만 증가시키며 감사품질 저하를 가져오므로 회원국에 대해 동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도록 촉구하였다.

5)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외부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감사인 교체 ‘러시(rush)’의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계법인 업계에서는 감사인 계약전이 막바지로 치닫는 ‘2달3초(2월말 3월초)’를 한 건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8년 감사인을 의무 교체해야 하는 회사는 무려 419개. 2006년 65개사, 2007년 121개사에서 대폭 늘어났다. 특히 ‘빅4’로 불리는 삼일, 안진, 한영, 삼정 회계법인에서 교체해야 하는 회사는 전체의 절반 정도인 208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일보 2008년 2월 21일자 기사 중 일부 발췌)

나. 미국 GAO의 연구보고서

2002년 미국은 Sarbanes - Oxley Act의 제정 과정에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회계법인의 강제교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회계감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강제교체 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그 혜택을 능가하여 상장법인에 환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다. 이에 의회는 강제교체 제도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을 GAO에 의뢰하였으며, 2003년 2편의 연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계속감사기간과 강제교체제도의 득실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회계법인, 상장법인의 최고재무관리자(CFO)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설문조사, 이해관계자(기관투자자, AICPA, SEC, PCAOB 등)와의 토의, 타국에서의 경험 공유, 감사인 교체 이후 재무제표 제작성 현황 분석을 통한 신규 감사인의 새로운 시각(fresh look)에서 얻을 수 있는 식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품질, 감사비용, 감사업무 수임경쟁 관련 논점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회계법인 강제교체제도의 영향력(미국 GAO의 연구보고서)

분 야	발 견 사 항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품질	- 강제교체제도를 주장하는 자들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속감사기간을 약 22년으로 보고 있음. - 감사인 교체 이후 감사 초기 연도에 새로운 감사인이 중요한 재무보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른 감사실패의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 - 강제교체 제도가 감사담당이사가 발견한 재무보고 특이사항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는 영향력 있는 압력으로 크게 작용치 않을 것으로 예상. - 강제교체제도로 계속감사기간이 종료되어 가는 감사업무에 종사해 온 경험 많은 감사팀 구성원들을 다른 신규 감사 수임을 위한 업무로 이전시킴으로서 현 감사업무에서의 감사실패 가능성 존재.
감사비용	- 강제교체제도로 새로이 수임하는 업무에서는 회사에 대한 사업 이해 등을 위해 감사 초기 연도에 20%의 감사비용 증가를 예상 - 마케팅 비용은 약 1% 증가 예상하며 이는 피감사회사에 전가될 것으로 예상 - 피감사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감사인 선정 및 지원 비용으로 초년도 감사보수의 17%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감사업무 수임경쟁	- 강제교체제도의 시행은 상장회사의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수를 축소시킬 것이며, - 상장법인 감사업무 시장점유율이 소수의 회계법인(예를 들어 Big 4)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Sarbanes - Oxley Act에서는 회계감사의 품질 및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담당이사의 주기적 교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금지,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이하 'PCAOB')의 설립,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의 실효성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의 도입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 회계법인⁶⁾과 Fortune 1000기업의 최고재무관리자(CFO)들은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로 인한 비용이 동 제도의 혜택을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Sarbanes - Oxley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제도(예를 들어 감사담당이사의 주기적 교체 등)로 충분히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혜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당분간은 SEC와 PCAOB에서 Sarbanes - Oxley Act의 실효성을 감독, 평가하면서 체득하게 되는 경험을 토대로 추후 법 개정 또는 강제교체 제도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한층 강화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각 회사의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하여 신규 감사인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인의 교체를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질 때 감사인 교체로 인한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3.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회계법인 강제교체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회사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업무 담당 사원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및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계법인 사원으로부터의 회수 실적은 각 회계법인의 규모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준의 응답을 얻도록 조치하였다. Big 4 회계법인 사원으로부터의 설문응답은 회계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으며, Non - Big 4 회계법인 사원에 대해서는 회원명부에서의 총 132명의 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송부, 회신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Big 4 회계법인으로부터는 97건, Non - Big 4 회계법인으로부터는 총 16건의 응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감사대상회사의 관계자는 상장회사 감사인명부상의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총 331명을 대상으로 하여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송부, 회신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감사대상회사의 관계자로부터의 회신은 회신율이 매우 저조하여 총 24건의 응답만을 본 연구에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표 2>에서는 설문 조사 응답자 현황을 요약하였으며, 설문문의 내용은 <표 2>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⁷⁾

6) AICPA의 자율규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계법인으로서 상장법인 감사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회계법인

7) 설문에 응답한 회사의 개황을 살펴보면, 자산총액 1조원이상이 9개 회사, 1천억 내지 1조원미만이 12개 회사였으며, 제조업에 속하는 회사가 15개, 금융업 4개, 기타 5개 회사였다. 설문 응답자인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기간은 평균 3.1년에 해당하며, 20개 회사는 현재 외부감사인으로 Big 4 회계법인과 계약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감사인과 계속감사기간이 3년이내인 회사가 14개, 4년 내지 5년인

〈표 2〉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대상 기관	대상	설문 배포수	응답자 수	회신률
회계법인	회계감사업무 담당 사원	229	113	49.3%
상장기업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회계감사 업무 담당자	331	24	7.3%

III. 설문조사 결과

1. 일반적인 회계감사와 감사비용, 감사보수에 대한 조사 의견

가. 초도 감사비용에 대한 의견

일반적으로 최초로 회계감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 감사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87.6%의 응답자가 초도감사의 경우 감사비용이 증가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감사비용의 증가정도는 20% 이상 40%미만의 답변이 74.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증가한 감사비용은 감사인 자신이 부담한다는 답변이 85.9%를 나타내고 있다. 즉, 초도감사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감사비용을 피감사대상 회사에 감사보수의 형태로 전가하지 못하고 회계법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초도감사가 회계법인에 재정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이는 결국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신규 감사업무 수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는 비금전적인 측면⁹⁾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동기가 감사업무에 미칠 수 있는 감사인 독립성 준수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한편, 초도감사비용의 증가와 관련한 상기의 조사에서는 회계법인의 유형(Big 4에 해당하는 지 여부)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모든 감사인이 유사한 형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회사가 6개 회사였다.

8) 이는 III. 1. 나. 절에서의 초도감사보수 할인 현상과 결부하여 생각한다면 초도감사에서 감사인의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이 심각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9) 예를 들어 특정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전문성 강조를 위한 진출, 그룹계열사에 대한 감사업무 획득으로 향후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참여 또는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기회 포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표 3〉 초도 감사비용

구 분		Big 4	NonBig 4	합계(%)
1. 초도감사비용의 증가 여부	증 가	84	15	99
	감 소	13	1	14
	합 계	97	16	113
차이검증 : Chi-square(p 값)=0.6472(0.4211)				
2. 감사비용의 증가 정도	50% 이상	6	1	7
	40% 이상	6	0	6
	30% 이상	35	7	42
	20% 이상	26	6	32
	10% 이상	9	0	9
	10% 이하	2	1	3
	합 계	84	15	99
차이검증 : Chi-square(p 값)=3.8514(0.5710)				
3. 증가한 감사비용을 감사인이 부담하는가?	매우 그렇다	18	3	21
	대체로 그렇다	52	12	64
	보통이다	6	0	6
	대체로 그렇지 않다	6	0	6
	매우 그렇지 않다	2	0	2
	합 계	84	15	99
차이검증 : Chi-square(p 값)=3.1569(0.5319)				

나. 초도감사시 감사보수 할인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초도감사시 발생할 수 있는 감사보수 할인 및 감사품질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담당사원들은 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도감사에 있어서 감사보수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역시 감사보수 할인 현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보수의 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는 64.6%가 감사품질이 감소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66.7%를 차지하고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감사품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초도감사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 강화 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감사노력의 과중함 등을 이유로 하여 과대신뢰위험(the risk of over reliance) 또는 부당수용위험(the risk of incorrect acceptance)의 증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서는 감사보수가 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초도감사가 감사보수 할인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A. 감사보수 할인 및 감사품질에 대한 견해				
구 분	회계법인			회 사
	Big 4	NonBig 4	합 계	
감사보수할인 & 감사품질 많이 감소	26	3	29	0
감사보수할인 & 감사품질 약간 감소	36	6	42	8
감사보수할인 & 감사품질 영향 없음	31	6	37	16
감사보수할인 & 감사품질 증가	3	0	3	0
감사보수할인 없고 & 감사품질 영향 없음	1	1	2	0
감사보수할인 없고 & 감사품질 증가	0	0	0	0
합 계	97	16	113	24

차이검증(Big 4 vs. NonBig 4) : Chi-square(p 값)=3.0851(0.5437)
 차이검증(회계법인 vs. 회사) : Chi-square(p 값)=13.1896(0.0104)

또한 감사보수 할인으로 감사품질의 하락 위험성이 있는 경우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 감사보수의 지급 또는 감사보수의 점진적인 인상과 같은 조치보다는, 감사인에게 최소감사시간, 전문인력 요구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외부 감사인이 내부감사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회사측에서는 감사품질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감사품질은 전적으로 감사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⁰⁾

이러한 회계법인과 회사의 감사품질에 대한 시각 차이는 회계감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할 쟁점 사항이라고 보인다. 회사의 경우 회계감사의 기본 자료인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감사인과의 효율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감사품질의 관리는 전적으로 감사인의 전유물로 파악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 회계감사 시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0) 물론 이에 대한 답변수가 매우 적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 초도 감사시 회사에 대한 이해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의견

<표 5>는 초도감사시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의 영업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에 회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74.8%(금융업의 경우), 91.2%(비금융업의 경우)를 보이고 있어, 초도감사시 최초 연도의 감사 업무에 있어 감사실패위험이 크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영업 성격이 복잡한 경우 이보다 최대 2년 정도 회사에 대한 이해 기간이 늘어난다는 응답 결과는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회사에 대한 이해 소요 기간*

구 분		Big 4	NonBig 4	합 계
1. 복잡한 금융업	1년	12	1	13
	2년 내지 3년	52	11	63
	4년 내지 5년	20	3	23
	5년 이상	4	0	4
	합 계	88	15	107
차이검증 : Chi-square(p 값)=1.6428(0.6497)				
2. 단순한 금융업	1년	65	12	77
	2년 내지 3년	21	4	25
	4년 내지 5년	1	0	1
	5년 이상	0	0	0
	합 계	87	16	103
차이검증 : Chi-square(p 값)=0.1882(0.9102)				
3. 복잡한 비금융업	1년	28	3	31
	2년 내지 3년	60	10	70
	4년 내지 5년	7	2	9
	5년 이상	0	0	0
	합 계	95	15	110
차이검증 : Chi-square(p 값)=1.0010(0.6062)				
4. 단순한 비금융업	1년	86	14	100
	2년 내지 3년	6	2	8
	4년 내지 5년	1	0	1
	5년 이상	0	0	0
	합 계	93	16	109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 : Chi-square(p 값)=0.8893(0.6411)				

현행 제도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3년 동안 계속감사를 보장하고 있으나, 회사의 업종이 복잡한 경우 회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질 정도가 되면 계속감사기간이 종료되는 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두 번째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계약기간중에는 회계감사 업무에 보다 충실하고 양질의 감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 또한 6년 강제교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회사에 대한 이해 기간은 회사의 업종이 금융업 또는 비금융업인지 여부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의 경우 회계감사시 감독규정의 준수와 같은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로 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선결 사항임을 비추어 볼 때 금융업이 비금융업에 비해 회사에 대한 이해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설문 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에 대한 감사시간은 많이 투입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회사의 이해 단계에서의 시간 소요보다는 감사실행 단계에서의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라.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실패 위험의 정도에 대한 의견

최근 제도화되고 있는 회계감사에 대한 규제는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로 인한 감사의 효과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봉쇄하고자 하는 조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피감사대상회사와의 지속적인 업무 유관성을 갖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가 쉽게 탐지될 수 있으며, 계속감사기간으로 인한 감사실패 위험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회계법인의 감사업무담당사원들은 계속감사기간이 감사실패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며, 약 58.4%의 응답자는 계속감사가 감사실패 위험을 낮춘다고 응답하였다.

회계감사업무의 성격상 초도감사시 피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가, 계속적인 감사를 수행할 경우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며, 이는 감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제한된 감사시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감사품질을 향상시켜 결국 감사실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전문가로서의 윤리기준만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실패 위험성은 계속감사기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기보다는 감사인의 적격성, 윤리의식, 정당한 주의의무 등과 같은 정성적인 요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감사기간을 제한하는 사전적 규제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표 6〉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실패 위험

구 분	Big 4	NonBig 4	합 계
매우 높다	2	0	2
높다	7	2	9
보통이다	31	5	36
낮다	48	9	57
매우 낮다	9	0	9
합계	97	16	113

차이검증 : Chi-square(p 값)=2.4226(0.6585)

마. 비감사서비스 제공시 독립성과 감사품질에 대한 견해

현행 외감법에 따르면 피감사대상회사에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업무(회계기록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등), 회사의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공할 수 있는 업무로 되어 있다.

<표 7>은 이러한 현행의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3가지로 구분 운영하는 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을 보여준다. 패널 A의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54.9%로서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독립성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 역시 상당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외관상 또는 제도상의 독립성 준수보다는 실질적인 독립성에 대한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립성을 제고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에서도 44.3%는 감사품질이 저하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감사서비스 제한이 감사품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감사품질이라는 것은 독립성보다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감사업무 수행이 결정적이라는 생각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패널 B에서는 상기 패널 A의 질문에서 감사품질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들을 상대로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현행의 비감사서비스를 구분하는 제도보다는 감사위원회의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을 용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임을 보여줌으로써, 독립성 제고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를 가져온다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비감사업무와 감사업무의 구분이 감사품질 향상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7〉 비감사서비스 업무구분과 감사품질의 관계

A.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행 업무구분이 독립성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구 분	Big 4	NonBig 4	합 계
독립성을 제고하여 감사품질 향상	30	4	34
독립성을 제고하나 감사품질은 저하	23	4	27
독립성에 영향 없으나 감사품질은 저하	6	2	8
독립성과 감사품질에 무관	36	6	42
합 계	95	16	111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 : Chi-square(p 값)=0.9242(0.8196)			
B. 현행의 감사-비감사서비스의 구분 및 운영에 대한 의견*			
구 분	Big 4	NonBig 4	합 계
현행과 같은 업무 구분에 동의	9	2	11
감사(감사위원회)의 동의(협의)를 통한 비감사서비스 제공 허용	45	10	55
합 계	54	12	66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 : Chi-square(p 값)=0.0000(1.0000)			

2. 감사인 강제교체에 따른 감사비용, 감사보수 및 감사인 변경에 대한 조사 의견

가. 강제교체제도에서 초도감사비용의 회복을 위해 향후 6년 동안 감사보수 인상 여부

현행의 외감법상 감사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최소 3년, 최대 6년의 감사기간이 유지될 수 있다.

<표 8>은 상기 Ⅲ. 1. 가. 절에서 초도감사시 감사비용이 증가한다고 답변한 경우, 현행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하에서 증가한 감사비용을 향후 최대 6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감사보수 인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결과를 보면 감사보수 인상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47.9%로서, 감사보수 인상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응답 35.7%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감사인이 Big 4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Big 4에 속하는 회계법인에서는 감사보수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간 많이 나왔으며, 이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인해 Big 4 감사인이 회계감사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¹¹⁾

11) 'Ⅲ. 2. 마'절에서 강제교체제도에서는 Big 4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가능성이 높은 결과와 종합해볼 때 가

〈표 8〉 향후 6년 동안 감사보수 인상 여부*

구 분	Big 4	NonBig 4	합 계
매우 그렇다	8	1	9
대체로 그렇다	33	5	38
보통이다	13	3	16
대체로 그렇지 않다	25	5	30
매우 그렇지 않다	4	1	5
합 계	83	15	98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 : Chi-square(p 값)=0.5317(0.9703)

나. 강제교체제도에 따른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의 지출

<표 9>에서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규감사를 수임하기 위한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지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응답을 보여준다.

Big 4 감사인의 경우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지출을 하겠다는 응답이 75.5%로서, 56.3%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NonBig 4 감사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로 인한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은 Big 4 회계법인간의 경쟁으로 압축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회사의 영업 환경이 복잡해지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조직력과 품질관리절차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Big 4 회계법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회계감사시장이 재편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은 초도감사보수의 약 5%정도에서 지출될 것을 예상한 답변이 많았으며, 이러한 추가 비용의 지출은 감사보수의 인상으로 회사에 전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감사보수는 감사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회사에서 감사제안서를 제출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차별화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 시점에 제안하는 감사보수가 차별화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능한 해석이다.

〈표 9〉 추가 마케팅 비용의 지출

구 분		Big 4	Non Big 4	합 계
1.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의 지출 여부	예	71	9	80
	아니오	2	4	6
	잘 모르겠다	21	3	24
	합 계	94	16	110
차이검증 : Chi-square(p 값)=13.8932(0.0010)				
2. 추가적인 마케팅비용의 정도*	10%이상	11	2	13
	5%~10%	15	5	20
	1%~5%	30	1	31
	1%미만	8	1	9
	잘 모르겠다	7	0	7
	합 계	71	9	80
차이검증 : Chi-square(p 값)=6.8964(0.1415)				
3. 마케팅 비용의 증가를 감사보수 인상으로 회사에 전가하는가?*	매우 그렇다	5	0	5
	대체로 그렇다	13	3	16
	보통이다	15	1	16
	대체로 그렇지 않다	34	5	39
	매우 그렇지 않다	4	0	4
	합 계	71	9	80
* 항목 2.와 3.의 경우 항목 1.에서 추가적 비용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함.				
차이검증 : Chi-square(p 값)=2.5392(0.6376)				

다. 강제교체에서의 감사보수 및 감사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는 일반적인 초도감사시 감사보수 할인이 나타남을 보인다는 응답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자발적인 감사인 교체와는 달리 회계법인은 강제교체 제도로 인하여 감사인을 교체하여야 하는 대상 회사들을 사전에 잘 알 수 있다. 감사인 교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감사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수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임경쟁(고객유치활동)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강제교체 제도로 인한 신규 감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초도감사 보수할인보다 더욱 두드러진 보수할인을 예상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6년 강제교체가 의무화된 이상 회계감사시장의 발전을 위해 감사보수의 증가를 예상할 수도 있다.

〈표 10〉 강제교체와 감사보수*

구 분		Big 4	NonBig 4	합계
1. 강제교체와 감사보수의 관계	자발적 초도감사보다 추가 보수 할인	33	9	42
	미약한 수준의 추가 보수 할인	41	3	44
	추가 보수 할인은 없음	2	0	2
	감사보수에 영향 없음	12	1	13
	미약하지만 장기적으로 감사보수 인상	5	3	8
	장기적으로 두드러진 감사보수 인상	0	0	0
	합 계	93	16	109
차이검증 : Chi-square(p 값)=7.8761(0.0962)				
2-1. 감사보수의 감소 정도	1%~5%	0	0	0
	6%~10%	7	2	9
	11%~15%	8	2	10
	16%~20%	11	4	15
	20% 이상	7	1	8
	합 계	33	9	42
차이검증 : Chi-square(p 값)=0.6387(0.8875)				
2-2. 감사보수의 증가 정도	1%~5%	0	0	0
	6%~10%	3	1	4
	11%~15%	2	1	3
	16%~20%	0	0	0
	20% 이상	0	0	0
	합 계	5	2	7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 : Chi-square(p 값)=0.0583(0.8091)				

<표 10>은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초도감사보수에서보다 추가적인 할인이 나타나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78.9%의 응답자가 강제교체로 인한 초도감사시 일반 초도감사보다 감사보수의 추가 할인이 발견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이한 점은 NonBig 4 회계법인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감사보수 할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강제교체제도가 시행되면서 감사업무 수입 경쟁에서 NonBig 4의 입지가 매우 약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감사보수가 두드러지게 할인될

것이라는 응답자의 과반수는 그 하락률이 15%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실제 감사보수 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 분석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감사보수가 장기적으로 볼 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7.3%에 불과하다. 강제교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수입경쟁에 의한 감사보수 할인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러한 제도가 지속될 경우 회계법인간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묵시적인 상호합의에 의해 감사보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보수의 현실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11>에서는 강제교체제도에서 예상되는 감사보수 추가할인이 감사효율성 및 감사인의 수익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감사보수의 추가할인은 결국 감사 효율성이 증가하여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경쟁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결국 감사인의 수익성 악화에 직결됨을 알 수 있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감사보수의 하락 원인에 대해 제시한 내용 중 회계법인간의 과당경쟁 및 피감사대상회사에서 강제교체 제도를 구실로 비용절감 차원에서의 감사보수 할인 요청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러한 답변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수요 창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법에 의한 강제 규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표 11> 감사보수 감소와 감사효율성, 감사인의 수익성의 관계

	구분	Big 4	NonBig 4	합계
1. 감사보수의 감소가 감사 효율성에 기인하는가?	감사효율성을 매우 증가시킨다	0	0	0
	감사효율성을 대체로 그렇다	0	1	1
	보통이다	2	0	2
	감사효율성을 대체로 감소시킨다	22	5	27
	감사효율성을 매우 감소시킨다	9	2	11
	합 계	33	8	41
차이검증 : Chi-square(p 값)=4.6392(0.2002)				
2. 감사보수의 감소가 감사인의 수익성 감소로 충당되는가?	매우 그렇다	17	4	21
	대체로 그렇다	15	5	20
	보통이다	0	0	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	0	1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합 계	33	9	42
차이검증 : Chi-square(p 값)=0.4949(0.7808)				

라. 감사인 강제교체시 회사의 감사인 선임 고려요소

회사의 입장에서 감사인의 강제교체 제도하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는 고려요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고려요소를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1) 자본시장에서의 기대
- (2) 회사의 영업환경(해외 의존도 등)
- (3) 산업에 대한 전문성
- (4)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사항
- (5) 이사회 요구사항
- (6) 회계법인의 풍부한 자원
- (7) 회계법인의 명성
- (8)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정도
- (9) 낮은 감사보수의 제시

조사 결과, 회계법인의 풍부한 자원과 산업에 대한 전문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87%), 회계법인의 명성,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정도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파악되었다(78%). 이사회의 요구사항, 자본시장에서의 기대, 회사의 영업환경 등이 차순위의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낮은 감사보수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30%) 이제는 회사에서도 회계감사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불필요한 지출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강제교체에 따른 감사계약의 유형

미국의 GAO보고서 등에 따르면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운용되면 결국 회계감사 업무가 Big 4회계법인과 같은 대형 회계법인에 집중됨으로써 회계감사시장의 편중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70.8%의 감사대상회사의 관계자가 NonBig 4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동일한 현상이 관찰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회사가 선택가능한 회계법인이 실질적으로 Big 4회계법인으로 국한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회사는 강제교체제도로 감사인이 실질적으로 Big 4 회계법인으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강제교체제도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보였지만, 그 응답자중 2/3는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교체제도의 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회계감사 시장의 편중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적인 고려 및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강제교체 후 기존 감사인과의 관계

감사인 강제교체로 인하여 새로운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까지만 가능하므로, 만약 3년 이후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기존의 감사인이 다시 감사업무 수임을 제안할 경우 회사의 대응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회사는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원점(zero base)에서 시작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을 고려하겠다는 의견(29%), 최대 6년까지는 동일한 감사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의견(38%), 그리고 기존감사인의 업무이해도가 높을 것이므로 기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의견(33%)에 대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의 감사인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회계감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감사인의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라는 단계를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회계감사가 회사와 감사인의 상호 협력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야만 감사인은 감사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회사는 관련 감사비용의 감소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이 무시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3. 감사인의 강제교체제도로 인한 환경변화 및 감사품질에 대한 조사 의견

가. 회계감사 시장의 환경 변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시행으로 대형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12>에 따르면 NonBig 4 회계법인의 경우 대다수의 응답자가 강제교체제도의 시행 후 대형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 100인 이상)과의 감사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Big 4 회계법인인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표 12〉 강제교체제도와 대형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

구 분	Big 4	NonBig 4	합 계
증 가	42	12	54
변화 없음	41	1	42
감 소	13	2	15
합 계	96	15	111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 : Chi-square(p 값)=7.9583(0.0187)

<표 13>에 따르면 강제교체제도로 인하여 감사수임경쟁에 참여가능한 회계법인의 수가 증가하므로 감사보수가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앞서 밝힌 강제교체제도가 추가적인 감사보수 할인을 가져온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환경변화를 제시한다.

〈표 13〉 감사수임경쟁에 참여가능한 회계법인수와 감사보수

구 분	Big 4	NonBig 4	합 계
회계법인 수 증가 & 감사보수 하락	70	13	83
회계법인 수 증가 & 감사보수 증가	1	0	1
회계법인 수 불변 & 감사보수 무관	15	1	16
회계법인 수 감소 & 감사보수 하락	7	2	9
회계법인 수 감소 & 감사보수 증가	4	0	4
합 계	97	16	113

차이검증 : Chi-square(p 값)=2.2840(0.6837)

나. 새로운 감사인의 재무보고 이슈사항 또는 중대 왜곡표시 발견에 대한 견해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에서는 새로운 감사인이 새로운 시각(fresh look)을 가지고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작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fresh look)이 신규 감사인으로 하여금 기존의 감사인이 발견하지 못했던 재무보고상의 이슈 사항을 발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59.3%의 응답자가 발견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표 14> 참조) 한편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에서는 신규 회사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표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도 생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49.6%가 그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재무보고 이슈사항에 대한 발견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중대한 왜곡표시사항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성 또한 높게 생각하고 있는 현상은 일면 일관성이 없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규 감사인의 새로운 시각이 회계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신규 감사인으로서 느끼는 회계감사의 한계 또는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보완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표 14〉 강제교체제도와 재무보고 이슈사항 또는 중대 왜곡표시사항 발견과의 관계

구 분		Big 4	NonBig 4	합 계
1. 재무보고 이슈사항의 발견 가능성	매우 높다	11	2	13
	높 다	49	5	54
	영향 없다	18	5	23
	낮 다	15	4	19
	매우 낮다	4	0	4
	합 계	97	16	113
차이검증 : Chi-square(p 값)=3.5726(0.4669)				
2. 중대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	매우 높다	12	1	13
	높 다	34	9	43
	보 통	37	4	41
	낮 다	9	2	11
	매우 낮다	5	0	5
	합 계	97	16	113
차이검증 : Chi-square(p 값)=3.6944(0.4489)				

다. 강제교체제도와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의 시행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5>에 나타나 있다. Big 4 회계법인이 NonBig 4 회계법인보다 독립성 증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53.7%)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독립성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약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독립성 증가 응답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관상의 독립성 못지않게 정신적인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독립성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표 15〉 강제교체제도시장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정도*

구 분	Big 4	NonBig 4	합 계
독립성이 매우 증가	4	2	6
독립성이 증가	46	5	51
독립성에 변화 없음	42	7	49
독립성이 감소	1	1	2
독립성이 매우 감소	0	1	1
합 계	93	16	109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 : Chi-square(p 값)=10.4457(0.0336)

라. 강제교체제도의 장단점 비교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감사인의 시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규 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감사실패 가능성, 초도감사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비용의 증가 등으로 감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회계법인 및 회사의 응답은 <표 16>에 제시하였다. 회사와 회계법인의 장단점에 대한 생각은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회계법인은 단점이 장점보다 많다는 의견이 44.4%로, 회사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는 의견이 39.1%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의 단점으로 제시된 감사비용의 증가 또는 감사실패 가능성 등이 회계법인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반면¹²⁾, 회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증가와 감사품질의 제고라는 장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진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시장에서 감사인은 감사실패로 인한 제재에 익숙해져 있고, 회사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관심사에만 치중함으로써 서로 그 반대 측면의 장단점에 귀 기울이지 못함을 반증한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인에게는 감사품질을 높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이해를, 회사에게는 회계감사가 감사인의 문제가 아닌 결국 회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함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12) III. 3. 다. 절에서 강제교체제도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증가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기록한 결과와 종합하여 판단할 때, 동 제도가 감사품질 제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16〉 강제교체제도의 장점과 단점 비교*

구 분	회계법인			회 사
	Big 4	NonBig 4	합계	
장점이 단점을 훨씬 능가	7	2	9	3
장점이 단점을 약간 능가	22	2	24	6
장점과 단점이 비슷	24	3	27	8
단점이 장점을 약간 능가	22	6	28	5
단점이 장점을 훨씬 능가	17	3	20	1
합 계	92	16	108	23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Big 4 vs. NonBig 4) : Chi-square(p 값)=2.4547(0.6528)

차이검증(회계법인 vs. 회사) : Chi-square(p 값)=3.7693(0.4381)

4.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전반적 의견

가. 강제교체제도의 주기

현행의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6년 주기를 변경한다고 가정할 때 몇 년을 주기로 감사인을 교체하는 것이 동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Big 4 회계법인은 8년 내지 10년의 주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42.9%), NonBig 4 회계법인과 회사는 5년 내지 7년의 주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43.8%와 45.5%)

〈표 17〉 강제교체제도의 적정 주기*

구 분	회계법인			회 사
	Big 4	NonBig 4	합계	
3년 내지 4년	3	4	7	3
5년 내지 7년	27	7	34	10
8년 내지 10년	39	3	42	6
10년 이상	22	2	24	3
합 계	91	16	107	22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Big 4 vs. NonBig 4) : Chi-square(p 값)=13.4881(0.0037)

차이검증(회계법인 vs. 회사) : Chi-square(p 값)=3.5638(0.3126)

나. 강제교체의 배제사유에 대한 견해

외감법에서는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해외 모기업과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 배제 사유에 대한 의견은 <표 18>과 같다.

〈표 18〉 강제교체 배제사유에 대한 의견*

구 분	회계법인			회 사
	Big 4	NonBig 4	합계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배제사유 폐지	30	13	43	3
배제 사유의 타당성 인정	23	2	25	9
추가적인 배제 사유 인정 필요	38	1	39	10
기 타	1	0	1	0
합 계	92	16	108	22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Big 4 vs. NonBig 4) : Chi-square(p 값)=13.8312(0.0031)

차이검증(회계법인 vs. 회사) : Chi-square(p 값)=6.3712(0.0949)

NonBig 4 회계법인은 이러한 배제사유를 전면 폐지하여 모든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 동일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반면 Big 4 회계법인은 배제 사유 폐지 의견도 상당수 있지만 현행의 배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인정 또는 이에 추가적인 배제사유의 고려 등으로 보다 개방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의견도 Big 4의 의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현행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의 회계감사업무를 대부분 Big 4 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고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역시 많은 비중을 Big 4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Big 4 회계법인 입장에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에 대해 자발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 회계감사 담당사원 교체제도와 비교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법인내 동일한 이사(담당사원)가 회사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회계감사업무 담당사원(Engagement Partner)의 강제교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외감법에서 다루고 있는 회계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처럼 감사인을 교체하지 않으면서도 감사인에게 새로운 시각(fresh look)을 제공하여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감사인 자체가 바뀌지 않으므로 기존의 회계감사업무 관련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약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감사업무담당사원 교체제도와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비교와 관련한 응답 결과는 <표 19>와 같다. Big 4, NonBig 4 회사 모두 감사업무담당사원 교체제도로 충분히 새로운

시각(fresh look)관점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감사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표 19〉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감사업무담당사원 교체제도의 비교*

구 분	회계법인			회 사
	Big 4	NonBig 4	합계	
담당사원교체제도만으로 효과성 및 효율성을 모두 충족	39	8	47	8
담당사원교체제도가 효율적이므로 현실적 대안	33	5	38	8
강제교체제도가 고비용을 유발하지만 반드시 필요	11	0	11	4
강제교체제도가 효과성 및 효율성을 모두 충족	4	1	5	3
기 타	6	1	7	0
합 계	93	15	108	23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Big 4 vs. NonBig 4) : Chi-square(p 값)=2.3338(0.6746)

차이검증(회계법인 vs. 회사) : Chi-square(p 값)=4.8943(0.2983)

라.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전반적 의견

마지막으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표 20>에 제시하였다. NonBig 4회계법인의 경우 현 제도의 시행시기 및 교체주기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는 응답이 40%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 Big 4 회계법인은 불필요 또는 폐지 의견이 46.7%, 추가적인 검토 의견이 37%에 달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회사도 52.2%의 응답자가 추가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의 시행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Big 4 회계법인에서는 동 제도의 보류를 희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0〉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전반적 의견*

구 분	회계법인			회사
	Big 4	NonBig 4	합계	
시행시기 및 교체 주기가 적절	14	6	20	4
다른 제도의 시행 효과를 평가한 후 강제교체제도의 유지 여부 결정 필요	34	1	35	12
내부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 강조를 통해 강제교체제도 불필요	27	3	30	7
효과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폐지	16	5	21	0
기 타	1	0	1	0
합 계	92	15	107	23

*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차이검증(Big 4 vs. NonBig 4) : Chi-square(p 값) = 10.0904(0.0389)

차이검증(회계법인 vs. 회사) : Chi-square(p 값) = 6.7682(0.1487)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3년 12월 외감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계법인의 6년 주기 강제 교체 제도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담당사원과 감사대상회사의 관계자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의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로 회계감사시장이 Big 4 회계법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강제교체제도의 시행으로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초도감사의 비용의 증가, 감사보수의 추가 할인, 마케팅 비용의 지출 등 많은 부분의 희생이 수반되지만 이러한 비용 등이 감사보수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회계법인의 영업실적 감소로 귀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제도의 시행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신규 피감사대상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감사효율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의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현행의 감사업무담당사원의 3년 주기 교체와 같은 제도로 회계감사의 새로운 시각(fresh look)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감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건설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폐지 또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으며, 이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합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는 앞서 살펴본 EABC(European - American Business Council) Policy Paper 및 미국 GAO의 연구보고서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보고서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외관상 독립성은 향상 될 수 있으나 회사에 대한 이해 정도의 감소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감사인 교체로 인한 감사인과 기업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감사업무담당이사(leading partner)의 주기적인 교체 제도만으로도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회사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역할 강화를 통하여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국 미국 및 유럽의 경우 강제교체도입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동일이사에 의한 계속 감사업무 제한은 여러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미국의 회계개혁법, 일본 등), 감사인 자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의 경우 강제교체제도 도입에 대한 별다른 검토 및 논의 없이 회계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갑자기 도입되었다. 강제교체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회계 업계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회계법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취지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 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며,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2008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외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회계법인 6년 주기 강제교체제도가 폐지되고, 감사업무담당이사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행하여 교체된 경우 이후 3개 사업연도 이상의 휴지 기간을 갖는 등의 법률 개정이 예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 제시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2003년에 새로이 도입한 회계법인 강제교체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동 제도가 회계산업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로 Big 4회계법인의 사원들의 응답이 주를 이루고 기타 회계법인 및 감사대상회사의 관계자들로부터의 응답은 매우 부족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적인 적용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회계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향후 여러 가지의 개선방안 등이 제시될 때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여 필요 없는 혼란을 야기할 여지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박재환 · 박희우 · 정태범. “감사인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2008년 3월
- 박종성 · 손성규 · 오원정. “계속감사기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39호. 2003년 12월
- 임영덕.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1권 제3호. 2006년 9월
- 임영덕. “자발적 감사인 교체시 신용등급별로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계가 달라지는가?”. 회계와 감사연구 제42호. 2005년 12월
- Brody, R. G., and S. A. Moscovice, “Mandatory Auditor Rotation”, National Public Accountants 1998, pp.32 – 36
- DeAngelo. L. 1981, 'Auditor Independence. 'Low 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July) : 113 – 127
- Dopuch, N., R. R. King, and R. Schwartz, “Auditor Change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001, pp.93 – 117
- Francis, J. R.,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84, pp.133 – 151
- Ghosh, A., and D. Moon, “Auditor Tenure and Perceptions of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2005, pp.585 – 613
- Gregory, A., and P. Collier, “Audit Fees and Auditor Change : An Investigation of the Persistence of Fee Reduction by Type of Change”,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1996, pp.13 – 28
- Myers, J., L. A. Myers, and T. C. Omer, “Exploring the term of the Auditor – 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2003, pp.779 – 800
- Palmrose, Z., “Audit Fees and Auditor Size :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pp.97 – 110
- Ryan, S. G., R. H. Herz, T. E. Iannaconi, L. A. Maines, K. Palepu, C. M. Schrand, D. J. Skinner, and L. Vincent, “Commentary. SEC Auditor Independence Requirements : AA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Accounting Horizons 2001, pp.373 – 386
- Sankaraguruswamy, S., and S. Whisenant, “Pricing Initial Audit Engagement : Empirical Evidence following Public Disclosure of Audit Fees”, Working Paper, Georgetown University.
- Simon, D., and J. Francis, “The Effect of Auditor Change on audit Fees : Tests of Price Cutting and Price Recovery”, The Accounting Review, 1988, pp.255 – 269
- Simunic D.,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80, pp.161 – 190
- Walker, P. L., and J. R. Casterella, “The Role of Auditee Profitability in Pricing New Audit Engagement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000, pp.157 – 167

A Study on th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Tae Beom Jeong* · Jae Whan Park** · Hee Woo Park***

— <Abstract> —

This study intends to re-evaluate the necessity of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based on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audit firm partners and public companies. Findings from the survey are as follows :

After th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system was enforced in Korea, auditor changes in public companies tend to be concentrated to Big 4 accounting firms. It means that this new system may make the audit services provided to public companies be limited to small number of audit firms. And many respondents believe that the system would finally weaken the accounting firms' financial status because of increased initial year audit costs, additional marketing costs and low audit fees.

Even if there are benefits from mandatory auditor rotation, new auditors have to take so much time to understand the business of the companies, which leads to the audit ineffectiveness or audit failure. According to the External Audit Law in Korea, we have had other significant reforms enhancing audit quality such as audit firm partner rotation.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is not the only one that enhances audit quality. Providing the "fresh look" viewpoint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initiative of audit committee rather than the requirements of law. For the time being, therefore, structuring the environment where the audit committees fulfill their role spontaneously is the first thing to ensure auditor independence and audit quality.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requirement needs to be revised or abolished.

<Key words>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Audit Quality, Auditor Independenc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 Management, School of Social Science, Chunga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